

『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6월 30일

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시민의 협력(안 제3조)
 - 시민은 국가수호·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함

- 재향군인 예우(안 제4조)
 -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 - 재향군인회 관련 각종 기념일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표창
 -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
 -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(안 제5조 및 제6조)
 -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
 -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회원들을 추모, 기념하는 사업
 -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, 안보현장 순례사업
 -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등

라. 참고사항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
-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요청 공문
(경상북도 사회복지과-21100 <2007.12.14>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 등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를 총 8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민의 협력사항이며
-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각종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,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
- 안 제7조 및 제8조는 보조금 지원 및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